

개인정보보호



박종혁 교수

Tel: 970-6702

Email: jhpark1@seoultech.ac.kr

목 차

- 1. 개인정보 보호 이해**
-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 3. 정보보호 법규 및 제도**
-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 개인정보 보호 이해

• 개인정보란? (법률적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 번호, 영상)
- 『정보통신망법』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음성)

법률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없음
 - 단, 연관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예) 대표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
 -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
 - 예) 외국인, 피의자 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함
 -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

개인정보란?

- **가명정보**
 -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 없음**
 - 전자, 수기 등 형태와 처리방식은 무관
 - 주관적 평가, 허위정보라도 해당될 수 있음
 - 예) 평가표, 예명

개인정보의 예시

구분	내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흉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연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법정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개인정보 판례

Q.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A.

-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
-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개인정보 판례

Q. 휴대전화번호 뒤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A .

-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 특히 그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 「그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 (생일, 기념일, 집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 고하여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고단17 판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개인

-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각종 범죄 노출 우려

- 기업

- 개인정보를 보유한 조직의 경우,
 - .유출시 기업이미지 실추
 - .소비자 단체의 불매운동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적 손해배상 등
- 으로 인한 기업 경영 타격

프라이버시 (Privacy)

- 프라이버시는 자기 자신에 전속한 권리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
 - 개인정보는 그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수집 ·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 기관 및 단체
- 프라이버시는 인격권 그 자체
 - 개인정보는 인격권의 침해가 없더라도 보호해야 할 경우가 있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의 분류

- 개인정보보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에서 파생한 것으로, 그 근본적인 의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것

구분	내용
Information Privacy (정보 Priv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관장하는 규칙을 수립하는 것-신용정보, 의료정보, 정부의 기록 등
Bodily Privacy (신체 Priv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의 신체 또는 물리적 존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예) 유전자 검사, 마약 검사, 체강(bodily cavity) 검사 등
Territorial Privacy (지역 Priv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환경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초점-환경: 가정, 직장, 공개된 장소 등-이 구분은 CCTV 감시, ID 체크 등의 침해와 관련
Communications Privacy (통신 Priv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우편, 전화대화, 이메일 및 여타 방식을 포함하는 통신의 보호와 관련

(출처 : <http://i-privacy.kr>)

용어 정리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별도로 보관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集合物)

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사본 발급 포함)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용어 정리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처리
- 개인정보 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등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용어 정리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
- 영상정보 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물 (사람)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8원칙
 - 처리목적 명확화, 수집제한의 원칙
 - 처리목적 적합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의 원칙
 - 정보 내용 정확성 원칙
 - 안정성 확보의 원칙
 - 공개, 개인참여의 원칙
 - 사생활 침해 최소화의 원칙
 - 익명처리의 원칙
 -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 OECD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 8원칙
 - 처리목적 명확화, 수집제한의 원칙
 - 처리목적 적합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의 원칙
 - 정보 내용 정확성 원칙
 - 안전성 확보의 원칙
 - 안전 보호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 참가의 원칙
 -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 GDPR 원칙
 -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 목적 제한의 원칙(한(Purpose Limitation))
 - 개인정보 최소화의 원칙(Data Minimization)
 - 정확성의 원칙(성(Accuracy))
 -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Storage Limitation)
 - 무결성, 기밀성의 원칙(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3. 정보보호 법규 및 제도

국내 정보보호 법제도 발전 배경

- 2000년 :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짐
- 2001년 : 금융,통신,에너지 등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제정
 - 이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강화.
- 2007년 : 『전자정부법』 개정, 2009년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
- 2011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2012년 : 『정보통신망법』이 대폭 개정되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보호체계를 개선
- 2015년 :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내용별 법체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정보보호시책의 수립

국가정보화기본법 : 정보보호시책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기반시설지정, 취약점분석평가

산업기술보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침해사고 대응

-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응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안대책 및 조치

- 정보통신망등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각종 평가·인증, 점검

- 전자정부서비스 보호
- 공공부문 보안적합성 검증제

전자서명

전자정부법 : 행정전자서명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법

정보통신망법

- 민간 침해사고 대응
- 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 이용자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침해 금지

- ISMS
- PIMS
- 관리등급, 사전진단 등

전자서명법 : 공인전자서명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주요 법률 현황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에 적용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 사전점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침해사고 신고
- 침해사고 대응
- 침해사고 원인 분석
-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SP, IDC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기반시설에 적용
- 주요기반시설보호대책 수립
- 주요기반시설지정 및 보호지원
- 취약점 분석 및 평가
- 주요기반시설 침해사고에 대응
- 복구조치 및 대책본부 구성

[적용 대상]
기반시설로 지정된
공공 또는 민간 시설

개인정보보호법

- 전체 국민에 적용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유출 규율
- 개인정보안전조치의무 규정
- 암호화 등 필요조치
-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실시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단체소송

[적용 대상]
공공기관, 비영리 사업자
오프라인사업자
오프라인이용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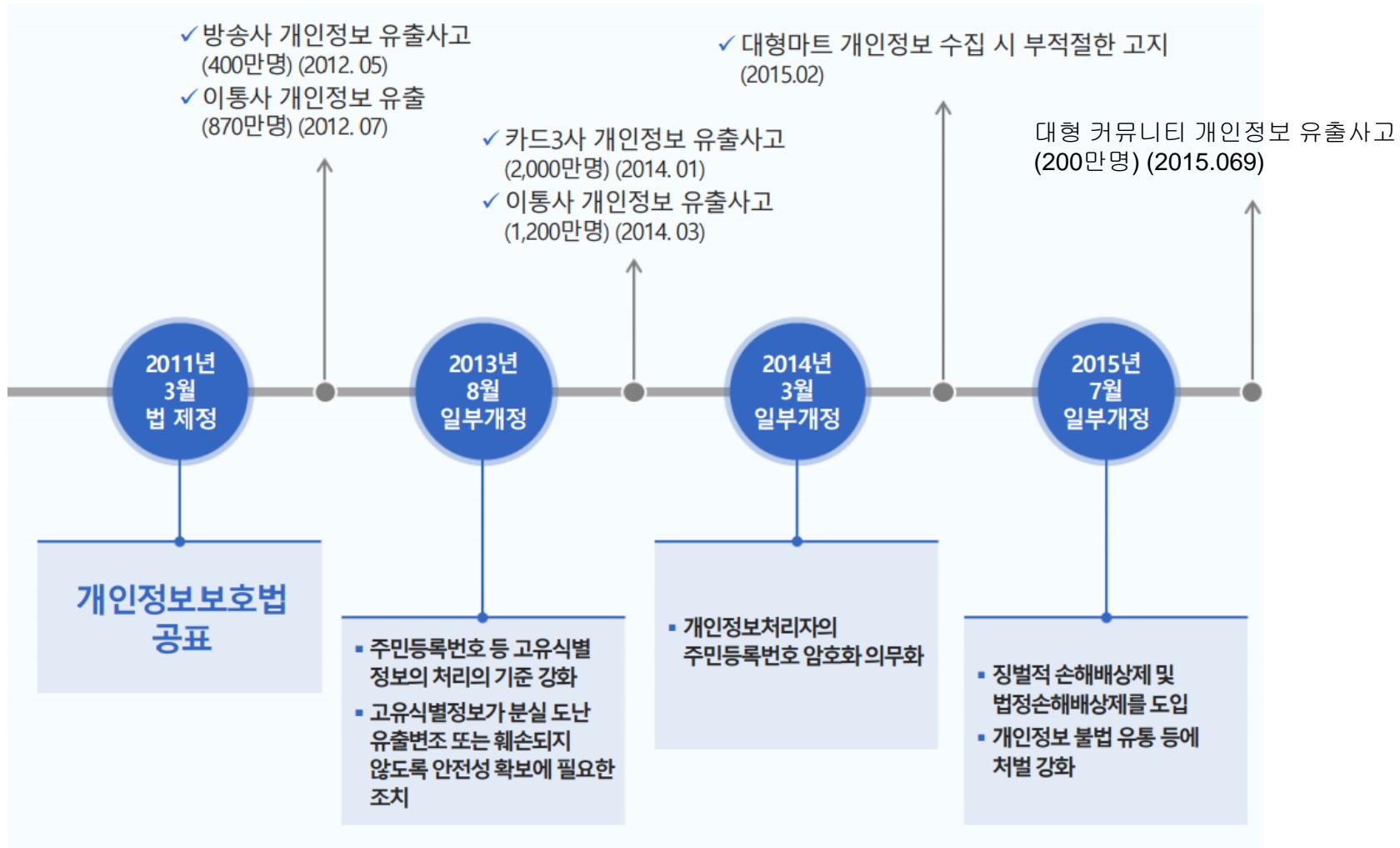
전자금융거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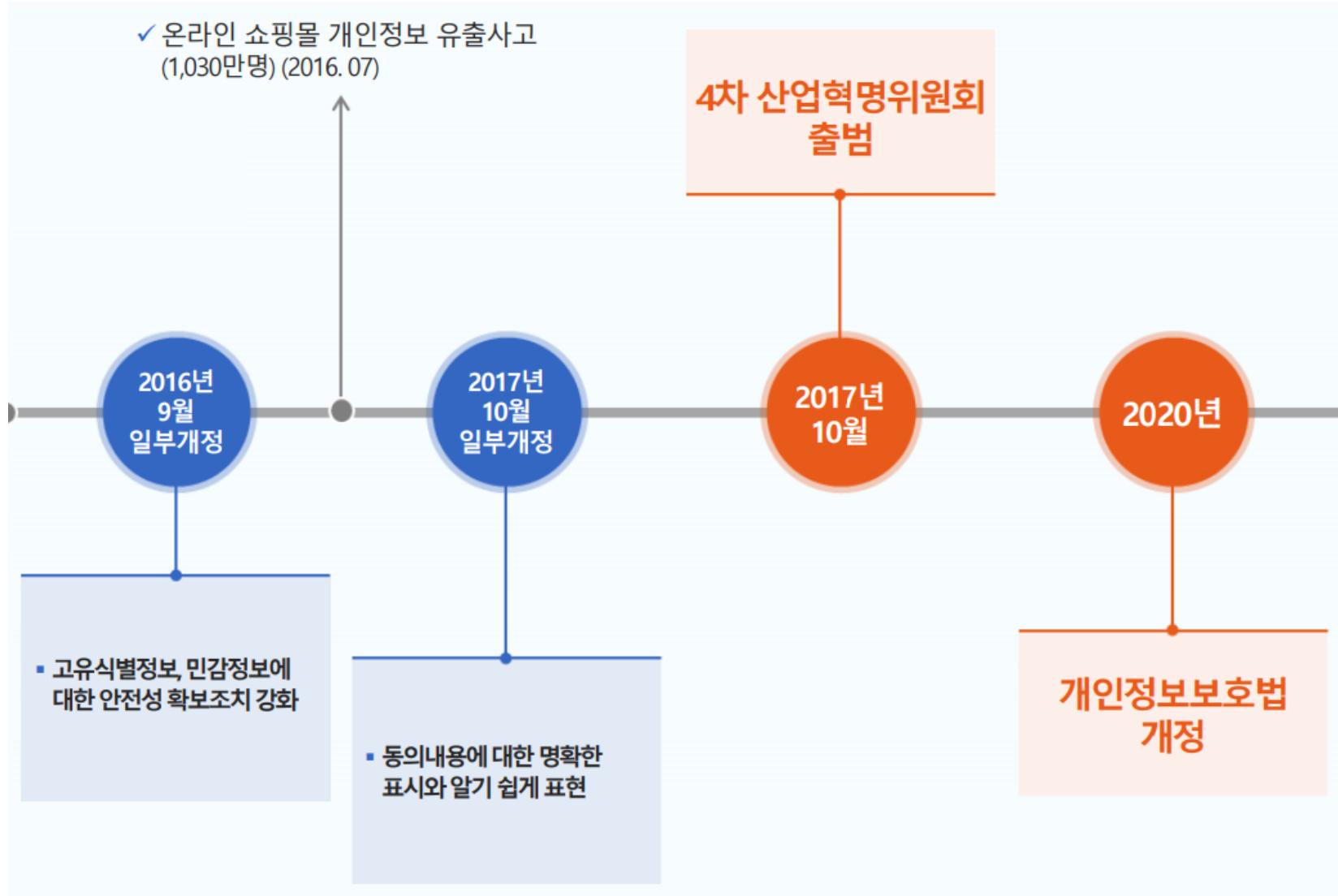
- 전자금융거래에 적용
- 금융기관 등의 선관주의 의무 규정
-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정보보호 인력, 조직, 예산, 시설 확보
- 정보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 해킹 등 방지대책 수립 및 운용

[적용 대상]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이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체계 마련으로 중복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 해소 및 체계적 정책 추진
- 기업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의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 마련 및 강력한 제재 조항 등을 통해 기업의 법적 책임성 강화
- 민감정보의 범위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안

1.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 (1) 개인정보 이용권 도입
- (2) 자동화 의사결정의 대응권 도입
- (3)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2.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

- (1) 동의제도 개선
- (2)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정비)
- (3)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 (4)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 (5)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3.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 (1)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성화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 (3)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 마련
- (4)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

개인정보 이용권 도입

- 필요성: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유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 활용하는데 한계**
 -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야별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신용정보법_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전자정부법 개정 중) 공공 분야 데이터 이동권
- 개정안: 본인 정보를 보인 또는 제 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이동권 신설**
 -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와 함께 **분야별 이동권을 전 분야로 확산**

자동화 의사결정의 대응권 도입

- 필요성: 인공 지능의 발전 등에 따라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신용평가, 인사채용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특정인에 대한 **감시·편견 등 신규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개인 의사에 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필요**
 - (한국) 신용정보법, 금융 분야 자동화 평가 결과의 설명 요구권 및 이의 제기권 규정
 - (EU) GDPR, 자동화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의견 표현, 이의 제기권, 거부권 규정
- 개정안: 산업적 효용과 정보주체 권리 간 균형을 고려하여 자동화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도입하되, 적용 범위 명확화**
 -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 또는 생명·신체 ·정신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 이의 제기 및 설명 요구권 등 신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 배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 필요성: 개인정보 권리 침해 시,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침해중지, 손해배상 등) 하는 **분쟁조정 제도 운영 중**
 -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조정에는 한계**
- 개정안: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 조사권 부여**
 - 유사 입법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등

동의 제도 개선

- 필요성: 사전동의 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형식적 동의 및 ‘동의 만능주의’ 관행 지속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39조의3)는 사실상 동의만을 적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서비스 이용 가능 ('동의 강제' 관행)
 -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실체적 통제 미흡
- 개정안: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제도 개선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필수동의' 규정을 정비하여 '동의 만능주의' 현상을 개선하고,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적법 처리요건 활성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보호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심사제도 도입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정비)

- 필요성: 데이터 3법 개정 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특례 규정(제6장)으로 단순 이전·병합**
 -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규제 (일반 규정)와 온라인 규제 (특례 규정)의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 부담이 발생
-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
 - 규정 통합: 일반 규정과 유사·중복되는 *특례규정은 일반 규정으로 통합·정비하여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 내용 또는 벌칙을 단일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 보호조치 특례 등
 - 적용확대: 특례 규정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 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정비)

개정방향: “모든 수법자 동일 규제” 원칙 적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

사업자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특례 규정	개정 방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9조의3 ①②)	• 제15조에 통합
•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개인정보 수집 (제39조의3 ③~⑥)	• 제22조의2로 신설
• 유출 통지·신고제도 (제39조의4)	• 제34조에 통합
•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제39조의5)	• 제28조에 통합
• 유효기간제 (제39조의6)	• 삭제
• 동의철회권 규정 (제39조의7)	• 제37조에 통합
• 이용내역 통지제 (제39조의8)	• 제20조의2 신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9조의9)	• 제39조의16 신설
•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제39조의10)	• 제34조의3 신설
• 국내대리인 지정 (제39조의11)	• 제31조의2 신설
•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39조의12)	• 제28조의8내지 제28조의10 신설
• 상호주의 (제39조의13)	• 제28조의11 신설
• 방송사업자등 특례 (제39조의14)	• 삭제 ※ 방송사업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포섭
• 과징금 특례 (제39조의150)	• 제64조의2 신설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 필요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는 낮은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하는 한계
 - 경제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
※ (EU)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총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 브리티시 항공 50만명 유출(2,700억원 과징금, 영국),
 - 구글 동의 방식 미준수 (650억원 과징금, 프랑스)
- 개정안: 형벌 중심을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제고
 - 형벌 제한: 형사 처벌 대상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의 위반행위로 제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정비에 따라 과도한 형벌 규정은 과징금으로 전환
 - 과징금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전체 매출액’의 3%이하로 상향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 필요성: 현행법은 시정명령 부과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이용 및 수탁자에 대한 제재근거 또한 부재
 - *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 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 가능
- 개정안: 시정명령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 시’ 처벌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도 과태료·과징금·형벌 등 제재 대상에 포함
 - 현행법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에는 누락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 필요성: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 상거래 확대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요구로 인한 기업 부담 유발
 - 반면,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만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지역으로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가 오히려 취약해 질 가능성 존재
- 개정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한 동의 이외의 적법 요건을 다양화
 - 요건 다양화: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 동의 없이 국외 이전 허용
 - (EU) GDPR, 국외 이전 제도 참조
 - ※ ① 타 법률 또는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법정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등
 - 보호조치 강화: 법을 위반하여 국외이전하거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않다고 판단 시 중지 명령권 신설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성화

- 필요성: 개인정보 축적·활용이 급증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정부 주도 규제만으로는 한계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기관의 **자율보호 활성화** 필요
- 개정안: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민간 자율규제단체의 자율보호 활동을 총괄·지원하고 정부와의 소통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 필요성: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기기 (CCTV)만을 규율하고 있어,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 한계
 - 현재 이동형 영상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에 한계
- 개정안: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 허용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 마련

- 필요성: 가명정보 ‘파기 의무’ 및 반출 심사위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 누락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비점 보완 필요
- 개정안: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의 일부내용 개정,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
 - 법 제28조의2 제1항이 가명정보의 처리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실 규정
 - 법 28조의7의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삭제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

- 필요성: 현행법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적용 예외 규정을 환경변화에 따라 정비할 필요
 - 『통계법』, 『감염병예방법』 등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어, 보호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개정안: 통계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일부 제외대상에서 삭제, **공중 위생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수집·이용 근거(제15조)로 이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사례

- **사례1**

- A는 즐겨 찾던 B사의 SNS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당 서비스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기사를 접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 .A는 B사에 비해 보안성이 우수한 C사의 SNS 서비스로 개인정보 이동 가능

- **사례2**

-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 상품 구매 시, 국내 쇼핑몰이 해외 판매자에게 배송 및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때마다 동의를 요하는 불편이 있음
-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 .EU 국민은 해외 상품 구매 과정에서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결정, 표준 계약 조항 등에 기하여 동의 없이 이전 가능
 - .통상 협상 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개선 요청 지속

참고문헌

- 4차 산업혁명의 정보보호개론, 장상수 저, 배움터
- 2021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
- (21년) 초급/중급/고급 과정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뢰 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Q & A
Thank You!